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 3. 13.(목) 10:00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 육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충청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김성대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2025년 3월 4일

○ 회부일자: 2025년 3월 5일

3. 제안이유

○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과 관련하여 2015년 제정된 이후,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현재 조례에 사용되는 문구로 수정, 표기법 정리 등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 개정(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 및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 표기 방법 변경(안 제3조, 안 제4조)

다. 휴식을 취할 권리 삭제(안 제5조)

라. 학습환경 조항 위치 변경 및 표기 방법 변경(안 제6조→안 제5조)

마. 청원의 권리 조항 위치 변경 및 문구 수정, 표기 방법 변경
(안 제7조→안 제6조)

바. 시행규칙 조항 위치 변경(안 제8조→안 제7조)

5.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이유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과 관련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적인 학습권과 교육권 보장을 강화하고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현재 조례에 사용되는 문구로 및 표기법 정리 등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에서 제3호와 제4호의 순서를 변경하고 제5호의 ‘제3호’를 ‘제4호로’ 변경, ‘학생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을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해당 학생이 학습할 수 있는 권리’로 개정함
 - 제5호는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성을 확보를 강화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3조와 안 제4조, 안 제5조의 표기 방법을 항 표기에서 호 표기로 변경함
- 안 제5조(휴식을 취할 권리)는 안 제4조(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본 조례에서 정하는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의 성격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고 판단됨
- 안 제7조(청원의 권리)를 안 제5조의 삭제로 안 제6조로 이동하고 안 제8조를 안 제7조로 이동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2조¹⁾ 및 제13조²⁾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³⁾에 근거하여 정규교육과정외의 학습에 대해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적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하는 것으로, 중복되고 조례와 맞지 않는 내용을 삭제하고 표기법을 정리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법령 입안 및 심사 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전체적인 조문 체계와 개정 주요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 및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 절차와 방법을 준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적절한 입법 조치라 판단됨

1)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개정 2021. 9. 24.>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9. 27.>

[전문개정 2007. 12. 21.]

2)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27.>

[전문개정 2007. 12. 21.]

3)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7.>

②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12. 27.>

[본조신설 2007. 12. 14.][제목개정 2022. 12. 27.]